

자주 묻는 지방세 질문과 답변

Q 소득세를 납부하였는데 지방소득세도 납부하여야 하나요?

A 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는 국세로서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이며,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별개로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 자치 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현재 세율은 기준금액(소득세)의 10%이며 소득세신고·납부시 지방 소득세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Q 한집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데 두 사람에게 개인 균등분 주민세가 부과되나요?

A 부모, 형제라도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인균등분 주민세가 각각 부과 됩니다.

Q 자동차세는 언제 납부하나요?

A 자동차세 정기분은 매년 6월, 12월 연2회입니다. 각각 6/1, 12/1기준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6.16~30, 12.16~31입니다. 다만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경차, 영업용화물차 등)은 6월에 연세액을 일시납하게 됩니다.

Q 차를 팔았는데 자동차세가 왜 부과될까요?

A 예를 들어 3월5일에 자동차를 매도(말소)하는 경우, 매도일 전날까지의 소유기간(1.1~3.4) 또는 말소일까지의 소유기간(1.1~3.5)에 대한 마지막 자동차세가 매도(말소)일이 속한 달의 익월에 고지됩니다.

Q 1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선납하고 자동차를 매도(말소)하는 경우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자동차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매도(말소)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됩니다. 연납 후 타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당해연도의 연납은 유효하므로 다시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 등록면허세를 12월에 납부했는데 1월에 고지서가 또 나왔어요.

A 처음 허가를 받거나 변경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신고분으로 납부하고, 매년 1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허가소지시 1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1월 1일 이후 폐업한 경우에도 당해연도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지방세 질문과 답변

Q 법인등기를 위한 등록면허세 중과세 지역이 궁금합니다.

A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이종과세 지역이며, 산업 단지는 제외됩니다. 토지이용규제서비스(<http://luris.molit.go.kr>)를 이용하여 조회·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서구의 중과세 제외지역

- 성장관리권역 : 마전, 당하, 원당, 대곡, 금곡, 오류, 불로, 왕길동 전체
- 경제자유구역 : 청라경제자유구역
- 국가 또는 지방산업단지 : 가좌, 경서, 오류동 일부지역

Q 등기가 필요없는 가설건축물도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A 가설건축물의 당초 존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연장하여 존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이는 건축물 축조에 따른 취득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등기와 관계없는 지목변경, 과점주의의 주식 및 골프회원권 등의 취득 또한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Q 집을 팔았는데 재산세가 왜 부과되나요?

A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제도입니다. 따라서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 소유자가 그 해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1일에 집을 매도했을 경우 6월1일에 소유자는 매수인이므로 납세의무자는 매수인입니다. 그러나 6월2일에 집을 매도했을 경우 6월1일 소유자는 매도인이었기 때문에 매도인이 납세의무자입니다.

Q 7월에 재산세를 낸 것 같은데 고지서가 또 나왔어요.

A 재산세는 매년 7월, 9월 부과됩니다. 7월에는 건축물, 주택1기분(1/2), 선박, 항공기, 주택연납(연세액10만원이하)에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2기분(1/2), 토지분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7월에 주택1기분(1/2), 9월에 주택2기분(1/2) 총 두 번을 납부하게 됩니다.

서구청 홈페이지에서 추가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만드는 내일 든든하고 편안한 서구



알기쉬운 지방세 안내 2017년



인천광역시 서구 세무2과

편리한 지방세 납부 안내

1 고지서 없이 은행에서 납부하세요.

고지서가 없이도 전국 은행에서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하여 통장 및 신용카드로 수수료 없이 조회·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방문은행에서 다른 은행 카드 사용시 기기사용료 900원이 추가됩니다.

●은행 ATM 납부방법

카드·통장 투입 → 지방세 선택 → 납부선택 (현금·신용카드) → 비밀번호 → 고지내역 조회 후 선택 → 납부 및 영수증 출력

※ 타인의 지방세는 고지서상의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여 납부 가능

2 가상계좌로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로 무통장, 인터넷 뱅킹 등을 이용하여 계좌이체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365일 00:30~23:00까지 이용하실 수 있고, 납세자와 입금자가 상이해도 처리됩니다.

3 위택스 www.wetax.go.kr

인터넷으로 전국 지방세 신고 및 조회, 납부, 정보검색이 가능한 지방세 포털입니다. (사용문의 : 국번없이 110)

4 ARS : 1599-7200, 1661-7200

신용카드로 납부하실 수 있고, 신한은행 텔레뱅킹 가입자는 계좌이체 납부도 가능합니다.

2017년 지방세 부과·신고·납부 일정표



1 마을세무사 안내

- 주민들의 세금고민 해결을 위해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우리 이웃 세무사입니다.
- 전화·팩스·이메일을 통해 상담이 가능하고, 필요시 직접 만나실 수도 있습니다.

검암·경서동	이 덕 균	568 - 8840
	남 수 연	715 - 7331
신현·원창·석남동	김 한 수	566 - 9338
	임 병 호	565 - 3343
가 좌 동	이 상 원	568 - 4426
청라지역	강 명 길	563 - 7692
검단지역	강 신 범	561 - 2800
	김 현 일	568 - 3786

※ 저소득층 및 영세사업자 등의 우선상담을 위해 일정금액 이상의 재산 보유자 등은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지방세 담당부서

취득세 (부동산), 등록면허세 (등록)	560 - 4210
취득세 (차량)	560 - 4237, 4473
주민세, 지방소득세	560 - 4920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하수)	560 - 4230
재산세	560 - 4200
등록면허세 (면허)	560 - 4950

3 국세문의

-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법인세 등의 국세 신고, 납부내역 조회, 상담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 홈택스 <http://www.hometax.go.kr>
- 국세상담센터 : 국번없이 126
- 서인천세무서 : 560-5200

4 주요 지방세 안내

● 취득세

부동산, 골프회원권, 차량, 선박, 차량, 과점주주의 주식(코스피 상장법인 제외) 등을 취득하는 자가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주요 과세대상	적용세율
6억원 이하 주택	1.1~1.3%
건축물(주택외) 및 토지	4.6% (농지 3.4%)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7% (경차 4%)

※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입니다.

● 재산세

매년 6월 1일 기준 토지, 주택, 건물, 선박 등을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합니다.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가 고지서 1장에 같이 고지됩니다.

※ 주택으로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합산과세되어 7월에 한번만 부과됩니다.

● 주민세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나 사업소를 둔 개인과 사업자, 법인에게 부과하는 **균등분**,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운영하는 자가 신고·납부하는 **재산분**,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신고·납부하는 **종업원분**으로 구분됩니다.

구분	적용세액
주소를 둔 개인	12,500원
사업소를 둔 개인 사업주	93,750원
법인	93,750 ~ 937,500원

※ 지방교육세 포함입니다.

● 지방소득세

개인의 소득에 따라 과세하는 개인지방소득세와 내국법인 등에 과세하는 법인지방소득세로 구분되며,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구분	납세의무자	납 세 지
개인소득	소득세 납세의무자	소득세 납세지
법인소득	법인세 납세의무자	사업년도 종료일 사업장 소재지

● 자동차세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1월에 선납하는 경우 연세액의 10%가 할인됩니다. 신규등록·말소·양도·양수의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합니다.

▶ 비영업용 승용차 :

배기량 × CC당 세액 × 차량 경감률 = 연간 납부세액

배기량	1000CC이하	1600CC이하	1600CC초과
CC당 세액	80원	140원	200원

※ 등록 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에 5%씩 최대50%가 경감되며, 자동차세액의 30%가 지방교육세로 부가되어 고지됩니다.

자동차세 연납하고 할인받기

후납제인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고 연세액에서 아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신청·납부하시면 다음해에도 연납고지서가 주소지로 자동 발송됩니다.

구분	1월	3월	6월	9월
공제율	10%	7.5%	5%	2.5%

자동차세를 체납하는 경우 전국 어디서나 예고없이 해당 자동차의 등록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 등록면허세[면허·등록]

권리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인가, 검사, 허가 등의 행위에 대해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공부 : 부동산·법인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등)

▶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액표

면허구분	1종	2종	3종	4종	5종
세액(원)	67,500	54,000	40,500	27,000	18,000